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58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정희용 · 김기웅 · 구자근
윤재옥 · 박충권 · 최수진
고동진 · 박준태 · 임종득
김종양 · 김선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여가·건강 증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해당 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u>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 ----- ----- ----- ----- ----- -----.
1. <u>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u>	1. <u>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u> <u>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u>

